

영등포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5. 1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제안일 : 2007년 5월 4일
- 회부일 : 2007년 5월 8일

2 제안이유

- 2006.9.1. 및 12.30.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개정하고, 정기분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예 맞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 면허세의 납기를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로 함 (안 제16조의2)
- 재산세의 세율을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이외의 주택을 세율을 규정 (안 제21조의2)

4**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별 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07. 3. 8 ~ 3. 28(20일 간)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개정 전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20일 우리구 의회에서 “영등포구세 조례 제21조의2제3호나목”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였으나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강화됨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2005년 6월 20일 전 “영등포구세 조례”와 같은 「지방세법」 상의 표준세율로 정비하고

-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 규정을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조·항·호 등의 표시는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포함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사이는 붙여 쓰기 함으로 안 "제21조의 2"는 "제21조의2"로 붙여 쓰고

안 제21조의2제3호나목 중 "가목이외의 주택"은 "가목 이외의 주택" 으로 띄어쓰기 하고

"6만원 + 4,000만원"은 "6만원+4,000만원"으로
"24만원 + 1억원"은 "24만원+1억원"으로 붙여 쓰기하고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5. 18

보고자 : 김 완 섭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령 1부.1부
3. 수정의견대비표 1부. 끝.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 (납기) (생략)</p> <p>1. (생략)</p> <p>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단서 신설></p>	<p>제16조(납기)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 증서를 교부받은 때</p>																				
<p>제21조의 2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 2. (생략)</p> <p>3.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가목 이외의 주택</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u><과세표준></u></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u><세율></u></td> </tr> <tr> <td style="padding: 2px;">4,000만원 이하</td> <td style="padding: 2px;">1,000분의 1.2</td> </tr> <tr> <td style="padding: 2px;">4,000만원 초과</td> <td style="padding: 2px;">4만8천원 + 4,00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1억원 이하</td> <td style="padding: 2px;">초과 금액의 1,000분의 2.4</td> </tr> <tr> <td style="padding: 2px;">1억원 초과</td> <td style="padding: 2px;">19만2천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td> </tr> </table> <p>4. ~ 5. (생략)</p>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2	4,000만원 초과	4만8천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4	1억원 초과	19만2천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p>제21조의 2(세율) ----- 각 호의 어느 하나로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가목이외의 주택</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u><과세표준></u></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u><세율></u></td> </tr> <tr> <td style="padding: 2px;">4,000만원 이하</td> <td style="padding: 2px;">1,000분의 1.5</td> </tr> <tr> <td style="padding: 2px;">4,000만원 초과</td> <td style="padding: 2px;">6만원 + 4,000만원</td> </tr> <tr> <td style="padding: 2px;">1억원 이하</td> <td style="padding: 2px;">초과 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 style="padding: 2px;">1억원 초과</td> <td style="padding: 2px;">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td> </tr> </table> <p>4. ~ 5. (현행과 같음)</p>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2																				
4,000만원 초과	4만8천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2.4																				
1억원 초과	19만2천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u><과세표준></u>	<u><세율></u>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1억원 이하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65조 (신고납부 등) ①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소재지 또는 주소지(이하 이 절에서 "납세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이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때에 당해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면허세를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1.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②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2000.12.29]

제188조 (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1. ~ 2 (생 략)

3. 주택

-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나. 가목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 5. (생 략)

② (생 략)

③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1> [전문개정 2005.1.5]

[붙임 3]

수정의견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 (납기) (생략) 1. (생략)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u><단서 신설></u>	제16조(납기)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제16조(납기)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의 2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2 4,000만원 초과 4만8천원+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2.4 1억원 초과 19만2천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4. ~ 5. (생략)	제21조의 2(세율) ----- 각 호의 어느 하나로 -----.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 + 4,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4. ~ 5.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세율) (개정안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6만원+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4. ~ 5. (개정안과 같음)
	부 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구정정 내역

구분	자구정정 전	자구정정 후
제4조의 2	<u>가목이외의 주택</u> <u>6만원 + 4,000만원</u> <u>24만원 + 1억원</u>	<u>가목 이외의 주택</u> <u>6만원+ 4,000만원</u> <u>24만원+ 1억원</u>